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534723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-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- 피고는 원고들에게,
가.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③, ④, ⑤, ⑥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.40m²(D호)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1. 15.부터 가.항에 적은 선내 부분 64.40m²(D호)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308,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13,519,513원에 대하여 2024. 10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의 가.항, 나.항과 같은 판결,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2의 가.항에 적은 선내 부분 64.40m²(D호)을 원상복구하고, 2023. 11. 15.부터 같은 선내 부분 64.40m²(D호)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308,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나. 인정 근거: 갑 제1~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[주문 제2의 다.항에서 인정한 13,519,513원(= 1,308,340원 × (10 + 10/30))은 2023. 11. 16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. 9. 25.까지 월 1,308,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의 합계이고, 이 돈의 청구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,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.]

3. 원고들의 청구 중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 부분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.

나. 2023. 11. 15.은 차임 지급일이므로(갑 제1호증)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연체 차임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 차임의 원금만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다.

판사이현종

별지

1) 주문 제2의 다.항에서 인정한 13,519,513원(= 1,308,340원 × (10 + 10/30))은 2023. 11. 16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. 9. 25.까지 월 1,308,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의 합계이고, 이 돈의 청구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,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 12%의 비율로

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.